

의안번호	2207032
의 퇴 인	김정재 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계번호	24E6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및 구입가능 횟수 확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6항(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및 구입가능 횟수 확대 - 판매품목: 주류, 담배, 시계 등 시행령 한정하여 규정 → 「관세법」에 따라 특정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 - 구입횟수: 연 6회 → 연 12회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6항(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 이용가능 횟수를 확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21조의13)
 - (판매물품)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등 시행령¹⁾에 규정된 물품 → 「관세법」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으로, 수출입 금지 물품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²⁾
 - (연간 이용가능 횟수) 6회 → 12회

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2)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면세대상에 포함되는 판매물품의 매출액, 연간 6회~12회 횟수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구입금액을 추정해야 하나, 현재 관련 자료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 현행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특례 제도 하에서 최근 이용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1]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실적

구분	순매출액(억원)	구매횟수(건)	구매 1회당 평균금액(원)	횟수별 이용자(명)	
2022	6,585	5,275,790	124,810	1회	3,351,771
				2회	486,399
				3회	128,071
				4회	52,905
				5회	28,252
				6회	35,681
2023	5,384	4,374,370	123,072	1회	2,854,635
				2회	371,386
				3회	100,630
				4회	43,028
				5회	23,662
				6회	30,775
2024	4,636	3,790,615	122,293	1회	2,471,250
				2회	321,055
				3회	87,123
				4회	37,764
				5회	20,585
				6회	26,979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